

『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므로
- 개인 사생활보호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안전한 도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1조)
 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마련
 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·연계 등
-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24조)
 - 통합관제센터의 구축, 역할, 운영·관리 방침 수립
 - 관제의 범위, 권한의 수임, 관제요원의 근무 관리 등
 - 통합관제센터 간 운용성 확보 및 운영업무 등의 위탁
-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 ~ 제2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
- 개인 사생활보호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안전한 도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